

참고 5.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동향과 리스크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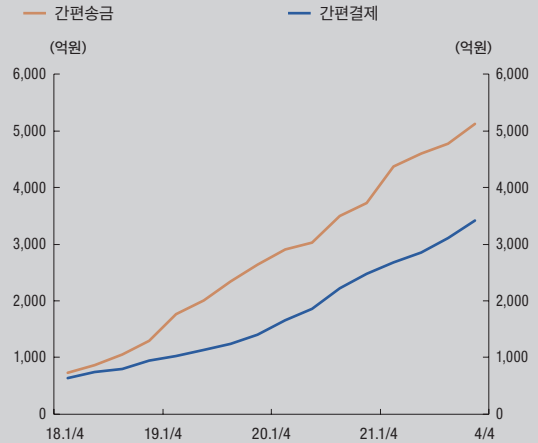
최근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¹⁾가 제공하는 간편결제·간편송금²⁾의 규모가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비금융회사를 통한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동향

은행이나 카드사가 아닌 비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³⁾에 따라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⁴⁾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인증절차를 간소화⁴⁾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규모는 오픈뱅킹공동망⁵⁾에 대한 빅테크기업 이용제한 폐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19년 12월부터 증가세가 확대되어 2021년 4/4분기에 일평균

3,412.5억원을 기록했다. 간편송금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4/4분기 일평균 5,130.1억원을 기록했다.

전자금융업자 제공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금액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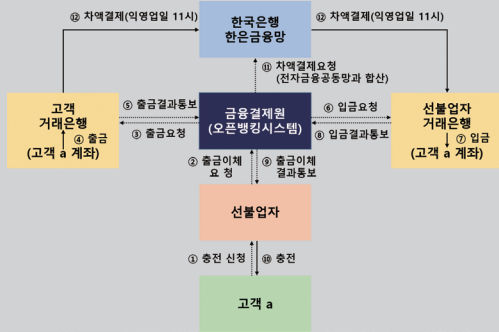
주: 1) 일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의 선불금 충전과 환급은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해 처리된다. 오픈뱅킹공동망 이용규모는 2021년 12월 중 일평균 469만 건, 1.1조원을 기록하는 등 빅테크기업의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제한이 폐지된 2019년 12월 이후 이용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2)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는 지급카드 등의 중요 정보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등록해두고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비밀번호, 지문 등 생체정보)을 이용하여 재화·서비스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간편송금(토스 등)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선불금계정에 미리 충전한 자금을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전화번호 및 선불금계정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이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발행업·전자자금이체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으로 분류된다.
4) 「전자금융거래법」 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15년 3월)되면서, 최초 가입시 1회의 본인인증(ARS, 본인계좌 점유 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거친 후 간편 인증수단(간편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게 되었다.
5) 오픈뱅킹은 핀테크업체 등이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오픈 API(여러 곳에 분산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3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객정보에 접근하여 지급서비스 및 금융정보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 8월에 핀테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형태로 오픈뱅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들과 핀테크업체들 간의 정보공유 계약 및 시스템 접속을 집중하고 핀테크업체가 요청하는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오픈뱅킹공동망)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12개 소액결제시스템 중에서 자금이체 건수 기준으로는 전자금융공동망에 이어 2번째, 금액 기준으로는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및 타행환공동망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선불금 충전 과정 예시



자료: 한국은행

선불기반 지급서비스 이용 증가 및 원인

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지급수단⁶⁾ 가운데 신용·체크카드의 비중이 최근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선불충전금의 비중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비중은 2018년 1/4분기에 79.9%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 4/4분기에는 65.0%로 하락한 반면, 선불충전금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1.6%에서 29.1%로 상승하였다.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은 모두 선불충전금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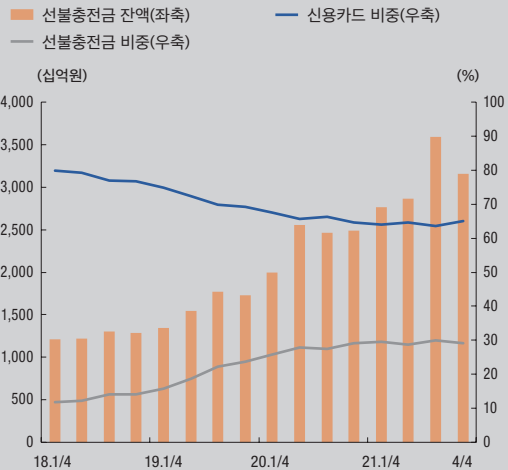
지급수단별 간편결제 이용방식

지급수단	간편결제 이용방식
신용·체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체크카드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간편인증을 통해 동 카드를 이용
선불충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전된 선불금으로 대금 지급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연결된 계좌에서 즉시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용 가능
계좌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계좌 정보를 저장해두고 간편인증을 통해 계좌에서 대금 출금

자료: 한국은행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선불충전금 잔액도 2019년말 1.7조원, 2020년말 2.5조원, 2021년말 3.2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선불충전금 잔액 및 전자금융업자 제공 간편결제 지급수단별 비중¹⁾



주: 1) 일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선불기반 지급서비스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선불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불충전금의 사용이 다른 지급수단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선불기반 서비스는 이용 과정에서 선불충전금 잔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잠금효과가 유발된다. 특정 선불

6)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충전금, 계좌이체 등이 있다.

업자에 선불충전금 잔액이 있는 이용자는 다른 선불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기존의 선불충전금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기존 선불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이용시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수취하는 반면, 선불 기반 결제의 수수료는 전자금융업자가 모두 수취하므로 수수료 측면에서도 선불업자에게 유리하다. 이용자의 관점에서도 선불금을 충전할 때 선불업자들이 충전금의 일정 비율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타 지급수단에 비해 이점이 있다.

한편 선불충전금을 이용한 간편송금의 증가는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서비스는 지급인의 선불충전금이 수취인에게 선불충전금 그대로 양도되는 방식(양도 방식)과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환급되는 방식(환급 방식)이 있다. 환급 방식은 지급인의 연계 은행계좌에서 자동 충전되어 수취인의 은행계좌로 바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선불충전금 환급 방식을 통한 간편송금에 대해 더 높은 자본금 규제가 적용되는 전자자금이체업⁷⁾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환급 방식을 통한 간편송금이 전자자금이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2015년 1월)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업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선불업자들이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선불기반 지급서비스 확대에 따른 리스크 점검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은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기술적 혁신을 유발하여 이용

자의 접근성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금융회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해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의 100%를, 간편송금을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의 50%를 외부에 신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불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s)에 대해 실효성 높은 규제를 적용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고 있다.

주요국의 전자화폐기관 이용자 자금 보호제도

국가	이용자 자금 보호제도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자금의 100%를 외부기관 분리예치 또는 지급보증 보험 가입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업체가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 설계 및 결과를 연 1회 이상 점검·승인받도록 함 ■ 파산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핀테크 업체가 사업중단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자금의 100%(자금이동업) 혹은 50%(선불업)를 공탁, 신탁 또는 지급보증 보험 가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자금의 100%를 중앙은행에 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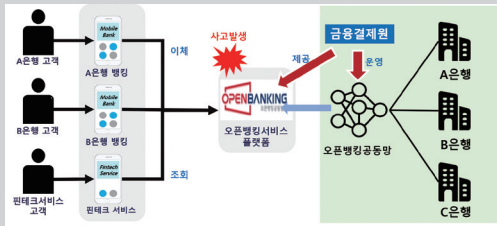
자료: 각국 법률

한편,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 주요국 오픈뱅킹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 등에 각각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7) 전자자금이체업은 보안카드·OTP 사용의무가 있어 간편인증이 불가능하며, 더 높은 자본금 요건(전자자금이체업: 30억원, 선불업: 20억원) 등 선불업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2022년 5월 기준 등록 업자(선불업자는 73개사)가 전무하다.

구조로 인해 오픈뱅킹공동망은 단일실패점 리스크⁸⁾가 크며, 금융결제원의 플랫폼에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의 권고에 따라 단일실패점 리스크 발생 시 업무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에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하였다.

오픈뱅킹공동망 구조 예시



자료: 한국은행

단일실패점 리스크 외에도 현재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요건에 관련 업⁹⁾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처럼 전용회선을 통해 오픈뱅킹공동망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 부정거래 사고 등의 보안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들 핀테크 기업을 경유지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결제원 운영 결재망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제도를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한도 확대¹⁰⁾ 및 종합지급결제업¹¹⁾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규제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자금 보호를 법제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처리과정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억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8) 특정기관에 대한 집중도 증가로 인해 해당 기관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중단을 야기하는 리스크이다.

9) 전자금융업자 외에도 전자금융보조업자,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 핀테크산업 분류 업종도 오픈뱅킹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다.

10) 현재 한도는 2008년 7월에 설정된 200만 원으로,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11)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형태로, 해당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금융회사만 영위할 수 있었던 계좌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